[표 4]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

건물명	상록 [illegible]	점검일	24년 10월 14일(요일)
주 소	내곡동 1093-29		
점검업체명	우리소방안전(주)	건물등급	그 급
설비명	점검결과 세부 내용		
소방시설			
피난시설	양호 종합정밀점검		
방화시설			
방화구획			
기타			

결재	담 당	과 장	국 장	시설장
		김홍규		

확인자	관계인: 정 훈 (서명)
기술인력	대행인력의 기술등급: 특급 대행인력: 강 병채 (서명)

비고

1.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(오동작)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.
2.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.
3. 계단,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.
4.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.
5.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(또는 관계인)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.